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규정번호 : 2-1-4
개 정 일 : 2017.8.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1절 일반전형

제2조(입학전형) ① 특수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의 원장은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3조(지원자격) ①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②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학사과정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학과(전공)에 따라 학사과정의 학과(전공)와 동일계열 이외의 학과(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입학전형 방법) 특수대학원의 일반전형은 전공과목 및 외국어에 대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원장은 특수대학원 위원회의 결의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또는 서류전형으로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비서류) ①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 서식)와 사진 3매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인정서 1부
3.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또는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7.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대학원의 입학 지원에 관한 접수업무는 인터넷 대행업체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형료 및 인터넷 결제의 수수료 기타의 비용은 지원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가산점) 특수대학원의 각 과정의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FLEX, TOEFL, TOEIC 및 HSK의 성적 우수자
2. 자격증명서의 소지자
3. 관련 기관의 근무 경력자
4. 관련 과정의 이수자

제7조(입학시험 과목 및 내용)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 과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
   ㉮어문학계열 : 전공외국어 또는 전공어문학
   ㉯인문과학계열 : 전공과목
   ㉰사회과학계열 : 전공과목
   ㉱자연과학계열 : 전공과목
   ㉲공학계열 : 전공과목
2. 시험내용 : 전공과목의 기본 지식과 판단 능력을 시험한다.
3. 구술시험 : 지원자의 대학 재학중의 학업성적,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과 응용능력, 적성과 인성, 지원동기 등을 심사한다.

제8조(출제방법) 특수대학원의 원장이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2인 이상의 교수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특수대학원의 입학시험의 과목별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전공과목의 점수가 100점 만점인 경우는 50점 이상, 200점 만점인 경우는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구술시험은 A, B, C, F의 4가지 등급으로 평가하고 입학사정에 반영한다.

제10조(합격사정) 해당 대학원위원회는 학위과정별 각 학과(전공)의 입학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사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특수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1조(입학생 등록) 특수대학원의 입학시험에 합격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 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학기의 개강일 부터 학생으로서의신분을 가진다.

제2절 특별전형

제12조(목적) 특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특별히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형범위) 특수대학원의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별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특수대학원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지원자격) 특수대학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제3조에 규정된 석사학위과정의 지원 자격자로 한

다.

제15조(지원구비서류) 특수대학원의 각 과정의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와 사진 3매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인정서 1부
   ㉰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1부
2. 연구과정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와 사진 3매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인정서 1부(개정 2017.8.3)
   ㉰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1부

제16조(전형시기) 특수대학원의 특별전형은 매 학기의 일반전형 이전에 실시한다.

제17조(전형방법) 특수대학원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원장은 특수대학원 위원회의 결의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또는 서류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학부와 대학원 학업성적, 연구실적, 경력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구술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적성, 학문에 대한 진지성, 연구계획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은 특수대학원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4.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점은 해당 전공(학과)교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개인별로 평가하여 이를 평균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1인의 심사위원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가산점) 특수대학원의 각 과정의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FLEX, TOEFL, TOEIC 및 HSK 성적 우수자
2. 자격증명서의 소지자
3. 관련 기관의 근무 경력자
4. 관련 과정의 이수자

제19조(준용규정) 특별전형의 합격 사정 및 입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재입학 및 편입학

제20조(재입학 대상) ① 특수대학원에서 제적되거나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학기 또는 자퇴한 학기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

② 재입학은 정원 중의 여석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21조(재입학 절차) ① 특수대학원의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학과(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재입학 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편입학 요건) 특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매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편입학자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3조(편입학 지원자격) 특수대학원의 편입학의 지원은 학위과정별 동일한 전공을 이수한 자로서 그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2학기생 편입학 지원은 1학기 이상의 등록자로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제3학기생 편입학 지원은 2학기 이상의 등록자로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제24조(편입학 지원절차)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편입학 지원서(소정 서식) 1부
2.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1부

제25조(편입학 별도정원) 특수대학원의 편입학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편입학 전형방법) ①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편입학 전형은 학부 학업성적, 석사학위과정의 이수과목과 성적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점은 해당 전공(학과) 교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개인별로 평가하여 이를 평균하여 산출한 성적으로 한다.

③ 특수대학원의 편입학 합격사정 및 입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 특수대학원 편입학 전까지 해당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 50% 이내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절 정원 외의 입학전형

제27조 (전형인원) 특수대학원은 교육부가 정하는 위탁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학칙 제8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공별로 적정 인원의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3)

제28조 (전형절차) ① 정원 외의 입학전형은 학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 또는 서류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자에게 한국어 능력시험을 부과한다.

제29조 (한국어시험) ① 한국어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합계 10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③ 국내의 공인 한국어학습기관의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0조(수업연한) ①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4, 2017.8.3)

1. 교육대학원 : 야간제 2년 6개월, 계절제 3년
2. 정치행정언론대학원 : 야간제 2년 6개월
3. 경영대학원 : MBA과정 2년
4. TESOL대학원 : 야간제 2년
5. KFL대학원 : 야간제 2년

② (삭제 2015.7.4)

③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공공정책학과 온라인행정학석사(이하 '온라인MPA' 라 한다)는 1개 학기(6개월)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KFL대학원은 1개 학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7.8.3)

제31조(재학연한) ①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4, 2017.8.3)

1. 교육대학원 : 야간제 4년, 계절제 5년
2.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SOL대학원, KFL대학원 : 야간제 4년
3. 경영대학원: MBA과정 4년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특수대학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학사운영

제1절 등록 및 납입금

제32조(등록의 종류) ① 특수대학원 등록은 정규 등록, 연구 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17.5.13)

제33조(정규학기 등록) ① 특수대학원의 정규학기 등록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 5개 학기
2.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 KFL대학원 : 4개 학기(개정 2017.8.3)

② 특수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1개 학기의 등록을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수료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하

여야 한다.

제34조(정규 등록절차) ① 정규 등록자는 매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입통지서를 출력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5조 (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6조(연구등록)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논문 및 연구보고서 미제출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취득시까지 최대 2개학기 동안 소정의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신설 2017.5.13)

②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1/4선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위취득예정학기 이전까지 소정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일시납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5.13)

③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연구등록(신설 2017.5.13)

1. 연구등록은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적용한다.
2.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거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1/4선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5%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구등록생은 논문심사비를 면제한다.

제2절 휴학, 복학, 전과, 퇴학 및 제적

제37조(휴학) ① 특수대학원의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2.20)

② 일반휴학은 질병, 사고,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 기간은 학위과정에서 입학 후 통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휴학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군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또는 교육소집을 받고 군에 입대한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의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임신 및 출산확인서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 임신·출산·육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2.20)

⑦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4.2.20, 개정 2015.6.24)

제38조(복학) 휴학기간이 경과하여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전과) 특수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과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영대학원은 과정 간 이동을 할 수 없고 과정 내에서 전과(전공)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과를 원하는 자는 제2학기 이내의 이수자로서 취득학점의 총평점 평균이 Bo 이상인 자로 한다.
2. 전과를 원하는 자는 전과신청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전과를 원하는 학과(전공)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3. 특수대학원 위원회는 전과신청자를 심사하여 확정한다.
4.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4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제적) 특수대학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자
5.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제3절 교육과정, 이수단위, 수강신청 및 성적

제42조(이수영역과 학점)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재학 중에 이수하여야 할 영역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특수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논문지도과목을 1학기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과목 및 졸업논문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공 선수과목은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9학점 또는 3개 교과목 이상을 학위논문의 제출 전까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 미이수 입학자는 재학 중에 교직 선수과목으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의 제출 전까지 14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제5장 규정에 의거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본인이 본 대학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의 교과목 변경 및 취소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본인이 본 대학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의 취소는 해당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취소 후의 신청학점이 2-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최종 학기 수강신청 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 및 수강신청을 취소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4조(수업) ①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수업은 야간수업, 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제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원격수업(이하 '온라인원격수업')등의 방법들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야간수업의 강의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특수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5.7.4)

③ 주간수업의 강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특수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실시한다. 단, 글로벌경영 MBA 수업의 강의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특수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5.7.4)

④ 온라인원격수업은 소정의 수업기간 중에 상시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온라인원격수업) ①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공공정책학과 온라인MPA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원격수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영대학원 온라인MBA과정은 온라인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

제4절 교과목의 개설, 선수과목 및 수강신청

제46조 (교과목 설정과 변경) ① 특수대학원의 교과목 설정은 주임교수의 발의로 특수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설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설정된 교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임교수의 발의와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47조 (교과목 학수번호의 부여) 설정된 교과목에는 개설 순서에 따라 연번으로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제48조 (교과목 개설절차) ① 특수대학원의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일 부터 3개월 전까지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에게 다음 학기의 교과목 개설을 신청하고, 특수대학원장은 개강일 부터 2개월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② 특수대학원은 매 학기 2~3개의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교과목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폐강기준) 개설 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 (선수과목) ①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대학원의 재학생 중에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선수과목을 1과목(2학점)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취득성적의 평점 Co 이상일 경우 그 학점을 인정한다.

1. 학부 전공 또는 부전공이 대학원의 전공과 다른 자
2. 학부 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③ 선수과목의 이수 대상자는 관련 학과의 교과목 중에서 9학점 또는 3과목 이상(단, 경영대학원 야간MBA 및 온라인MBA과정은 6학점 또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 전의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전공 주임교수가 선수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의 이수는 면제될 수 있다.

④ TESOL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 입학할 경우 선수과목 중의 해당 학점을 면제할 수 있다.

제51조 (선수과목의 지정과 수강절차) 선수과목의 이수 해당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선수과목 이수계획서를 특수대학원에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선수과목 이수시기) 선수과목은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 이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53조 (수강신청과 시기) 매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는 개강일 전까지 학사일정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한다

제54조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① 매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대학원 선수과목(교직 기본이수영역 과목 및 교직 보충과목 포함)은 정규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에는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변경 2007. 8. 31)

③ 최종학기의 논문 또는 기타 논문 대체 학점은 제1항의 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경영대학원 야간MBA과정의 선수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간MBA과정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 및 글로벌경영 MBA과정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0학점(경영·금융학과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영대학원 4학기 이상 수강신청 최소이수학점은 2학점으로 하며,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7.6.19, 2014.2.20, 2015.7.4, 2017.5.13)

⑤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9학점 또는 3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교육대학원의 수강신청 학점은 국·내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3학기부터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 8. 31)

⑦ KFL대학원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학기까지 16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4.0이상이고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논문지도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7.8.3)

제55조 (교육실습) ① 교육대학원의 중등학교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 이전에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실습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6.11.30)

② 교육실습 신청자는 소정의 교육 실습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습 이수자는 교육실습기간(4주)동안 유고결석 및 결시를 인정한다.(신설 2017.2.18)

④ 교육실습 유고결시로 인정된 경우,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 하에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에 정규시험을 2회 실시하는 수업에서 1회 유고결시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1회에 응시한 정규시험 성적으로 결시시험 성적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7.2.18.)

⑤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의 교육실습은 국립국어원의 지침을 따른다.(신설 2017.8.3)

제56조(시험)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매 학기 필답고사로 사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과제물 등에 의하여 사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에서 이수하는 교과목은 학부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 사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성적인정 점수) 특수대학원의 각 교과목 학업성적은 평점 Co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업성적은 총 이수교과목의 평균 평점이 Bo(3.0)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선수과목등의 성적처리) 특수대학원에서 선수과목, 논문지도과목, 졸업논문과목, 취소 전 수강 과목과 성적 평가가 미완된 과목 및 재수강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선수과목, 논문지도과목 및 졸업논문과목의 성적은 학적부에 "P"(Pass)로 기재된다.

②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삭제한다.

제59조(출석과 결석) ①특수대학원의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자동적으로 F로 처리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교과목 담당교수) 특수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내 전임교원(초빙교수·겸임교수 포함) 및 교외의 부교수 이상인 교원
2. 교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관련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특수대학원장이 교과목 담당교수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61조 (담당교수 제청) ① 전공(학과)주임교수는 개설 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매학기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신규의 교과목 담당교수의 제청에는 그 담당교수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이력서
3. 추천 사유서 (해당자에 한함)
4. 교원인사 기록카드
5.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7. 출강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③ 주임교수는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 및 교과목 담당교수를 전공 교수회의의 협의로 제청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담당교과목 수의 제한) 교과목 담당교수가 특수대학원의 소속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1인당 매 학기 담당 교과목의 수는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전공 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강의계획서 입력)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 학기의 수강 신청 개시일 전까지 전산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제5장 수 료

제64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교육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6학점(논문 포함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제출자의 경우 24학점, 졸업 연구보고서 제출자의 경우 28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MPA의 경우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경영대학원 주간MBA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9학점 이상(논문졸업시 30학점 이상), 야간 및 글로벌경영 MBA과정 32학점 이상(논문졸업 시 28학점 이상)으로 하고, 온라인MBA과정의 경우는 33학점 이상(논문졸업 시 27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3.1, 2015.7.4)

④ TESOL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제출자의 경우 24학점, 졸업 작품 제출자의 경우 2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 KFL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 및 학습포트폴리오 제출자의 경우 24학점, 추가학점 이수자의 경우 30학점으로 한다.(신설 2017.8.3)

제65조(타 대학원 및 인턴십 학점 인정) ①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와 인턴십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2.20)

② 다른 대학원에서의 수강에 의한 교환학점은 매 학기 국내 대학원 2학점, 국외 대학원 6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에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에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교환학점에 관한 교과목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대학원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으로 한다.

④ 특수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없다.

⑤ 경영대학원 MBA과정의 교환학점은 국내 대학원의 경우 학기당 주간과정은 3학점, 야간 및 글로벌경영 MBA과정은 2학점까지로 하며, 재학기간 중에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주간과정의 경우 12학점, 야간 및 글로벌경영 MBA과정의 경우 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인턴십 수행에 따른 인정학점은 주간과정은 최대 8학점, 야간, 글로벌경영 MBA 및 온라인 MBA과정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현장학습 학점의 경우 최대 2학점(1학점 × 2회)까지 당해학기 인

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학습 학점의 산입으로 인한 해당학기 초과학점은 인정하기로 한다.(개정 2011.3.1, 2014.2.20, 2015.7.4, 2017.5.13)

⑥ TESOL 대학원은 타 대학원의 TESOL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전공 8학점 인정과 1학기 수업연한 단축을 인정할 수 있으며, 타 대학원에서 TESOL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 전공 6학점,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전문교육원 과정을 수료한 경우 전공 4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⑦ 타 전문대학원과의 공동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타 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하는 학점을 9학점까지 본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66조(자격시험)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실시, 출제 및 합격판정에 관하여는 본 시행세칙의 규정을 제외하고 학위수여규정 제3장(석사학위)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67조(응시원서)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 학년도에 학기별로 1회씩 실시한다.

제69조(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의 2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0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 관련학과 및 TESOL학과는 영어를 제외한 학부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외국어 교과목 중에서 1개 교과목을 택하여야 하며, 외국인 학생은 자국어를 제외한 외국어과목에 응시하여야 하고,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의 대체 '영어' 교과목을 B+ 이상(Pass 학점) 이수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외국어시험 과목 중에 영어과목, TOEFL, TOEIC 또는 FLEX를 소정의 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의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온라인MPA 입학자로서 제4학기 등록을 마치고 이수과목 30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총평점 평균 Bo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개설한 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하여 그 성적이 85점(B+) 이상 또는 통역번역대학원과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여 85점(B+) 이상인 자는 이를 다음 학기 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학기의 수료자 및 석사학위수여 예정자는 제외한다.

⑥ KFL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중 TOPIK 6급 이상 소지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신설 2017.8.3)

제71조(출제기준과 시험시간) 외국어시험의 출제기준 및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은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 인문·사회계열학과(전공)와 자연과학·공학계열학과(전공)로 구분하여 출제한다.
2. 석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한다.

제72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② 외국어시험 중에서 영어과목의 지원자가 공인 외국어시험 점수를 외국어시험 시행일 2년 이내에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의 합격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의 인정은 특수대학원 별로 또는 계열 별로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시행할 수 있다.

제73조(합격인준) 외국어시험의 합격은 시험의 결과 또는 대체 교과목 또는 시험의 성적으로 결정한다.
제74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차기의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절 종합시험

제75조(응시원서 및 응시료)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이하 '종합시험' 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 학년도에 학기별로 1회씩 실시한다.

제77조(응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의 4회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단, 교육대학원 교육학 과목은 3회 이상 등록,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응시 가능함)
② 경영대학원 주간MBA과정의 종합시험 응시 자격자는 3회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야간 및 글로벌경영 MBA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자는 3회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16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온라인 MBA과정은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5.7.4)
③ TESOL 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KFL대학원은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6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2017.8.3)

제78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의 시함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중에서 학과(전공)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그 시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5.7.4, 2017.8.3)
1. 교육대학원의 시험과목은 교육학 1개 교과목, 전공에서 지정하는 2개 교과목 이상으로 한다.
2.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시험과목은 전공필수 1개 교과목 , 전공 선택 1개 교과목 이상으로 한다.
3.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온라인MPA 입학자로서 제4학기 등록을 마치고 이수과목 30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 총 평점 평균 B^0인 자에게는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4. 경영대학원 MBA과정의 시험은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과목은 해당 전공별 1개 또는 2개 교과목으로 한다.
5. TESOL 대학원 종합 시험 과목은 전공필수 2개 교과목, 선택 1개 교과목으로 한다.
6. KFL대학원의 종합시험과목은 전공별 필수 1개 교과목, 선택 1개 교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79조(출제기준과 시험기간) 종합시험의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4)

1. 종합시험은 전공영역과에 관한 전문지식, 연구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한다.
2. 종합시험의 시험시간은 매 교과목 60분으로 한다.
3. 경영대학원 MBA과정의 종합시험 시간은 120분이내로 한다.

제80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과목 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제81조(합격인준) 종합시험의 합격은 시험의 결과로 결정한다.

제82조(재시험) 종합시험에서 일부 교과목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차기의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장 석사학위논문, 졸업연구보고서 및 논문대체학점

제83조 (석사학위 취득자격)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수여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2. 전공 교수회의에서 지정한 논문대체 학점의 이수
3. 졸업연구보고서의 제출

제84조 (논문대체 학점) ① 논문대체 학점은 6학점 이상(단, 경영대학원 야간 및 글로벌경영 MBA과정과 TESOL 대학원은 4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9.19, 2015.7.4, 2015.10.27)

② 논문대체 교과목의 개설 및 학점 이수의 시기는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85조(논문 지도과목 이수)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논문 제출학기 이전에 논문지도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C0) 이상의 성적을 합격으로 평가한다.

제86조(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학위수여규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1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
4.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1개 학기(교육대학원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6. 온라인MPA 입학자로서 제4학기 등록을 마치고 30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제87조(논문·연구보고서 제출신고) ① 학위수여규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논문제출자격 요건을 갖추고 석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의 심사를 원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제출신고서를 특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제출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지도교수

의 논문제출 승인서와 함께 심사용 원고를 논문의 경우 3부, 연구보고서의 경우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학위논문의 작성 언어와 분량) ① 석사학위논문은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하며,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 또는 해당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고, 해당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한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분량은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A4 용지 2줄 간격의 50매 내외이어야 한다.

③ 졸업연구보고서의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로 한다.

제89조(논문·연구보고서 제출시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 시기는 5월 말과 11월 말로 한다.

제90조(심사위원 구성) ① 특수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7.5.13)

② 졸업연구보고서 심사위원은 2인을 위촉한다.

제91조(심사위원장) ①특수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장) 1인을 위촉하여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의 심사를 주재하도록 한다. 논문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② 주심은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특수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2조(논문·연구보고서 심사) ① 논문 작성자는 논문내용을 요약하여 심사위원 참석 아 래 논문의 개요와 내용에 관하여 1회 이상의 공개로 발표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경우 이를 전자적 통신에 의한 원격 심사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논문의 공개발표의 경우 방청인도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③ 졸업연구보고서의 심사는 서면심사로 시행한다.

④ 심사위원은 각기 그 심사요지를 소정의 기일 내에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논문심사 판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학기 내의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② 논문의 내용이 불실하여 해당 학기 내에 논문의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논문의 심사를 1개 학기 이상 연장한다.

제94조(논문·연구보고서 평가방법) ①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성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졸업연구보고서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성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석사학위논문 및 졸업연구보고서 학점과 성적은 학적부에 "P"(Pass)로 기재된다.

제95조(구술시험) ①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와 병행하여 구술시험을 최종시험으로 본심사의 완료와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경우 이를 전자적 통신에 의한 원격 심사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1개 학기 경과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술시험의 평가는 본심사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96조(학위논문 공표)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7조(논문·연구보고서 재심사) 심사에서 불합격된 석사학위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의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논문의 심사가 가능한 마지막 학기의 심사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8조(학위논문 인쇄) ① 논문심사에 통과된 석사학위논문의 작성자는 논문심사에서의 수정과 보완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최종적으로 작성한다.

② 논문의 통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인쇄하여 제본한 후 심사위원 3인의 승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소정의 기일 내에 특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사학위논문 인쇄, 제본 등은 특수대학원 학위논문 인쇄 및 제본 예규에 따른다.

제99조(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석사학위논문은 10부와 함께 워드프로세서 제작본 2매(논문수록 디스켓 또는 CD)를 소정의 기일 내에 특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논문·연구보고서 심사료) 석사학위 청구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는 논문과 연구보고서의 심사 전에 소정의 심사료를 특수대학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장 석사학위수여

제101조(학위수여 자격)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102조(학위수여 사정) 특수대학원장은 석사학위수여 여부를 해당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제103조(학위의 수여)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의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04조(학위수여 보고) 총장은 특수대학원의 학위 취득자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다.

제105조(학위기 서식)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기는 별표(서식 1)의 서식과 같다.

제9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106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특수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위탁연구과정

제107조(공개강좌) ①특수대학원에서는 일반교양과목의 수강 또는 연구상 전공분야의 학문이나 어학에 관한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그 명칭, 기간이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특수대학원 원장이 이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108조(연구과정) ① 특수대학원장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과 새로운 학문의 수강을 위한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 자격과 동일하며, 수업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한다.

③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여 1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④ 연구과정의 수료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소정의 학점을 석사학위과정에서도 인정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교육대학원은 소정의 학점만 인정하고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없다.

제109조(위탁연구과정) ① 특수대학원의 각 학과에 위탁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위탁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일하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③ 위탁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여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④ 위탁연구과정의 수료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고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110조(수료증 서식)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 및 위탁연구과정의 수료증은 별표(서식 2, 3)의 서식과 같다.

부 칙<2005. 2. 3>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시행세칙 폐지)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세계경영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교육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경영정보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및 '정책과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종전의 시행세칙이 적용될 경우보다 불리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② 이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종전의 시행세칙에 의한 졸업증서, 학위기, 학위증 등의 수여 및 제반 학사행정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4) 특수대학원의 실정에 맞게 이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이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5. 11. 7>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0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이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종전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시행세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6. 8. 25>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이 변경 시행세칙 중 경영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세계경영대학원 및 경영정보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는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졸업할 때 까지는 이 변경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경영대학원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6. 19>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1>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0>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13>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시행세칙 중 정치행정언론대학원의 명칭변경은 2007. 11. 13 학칙 변경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7. 31>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4>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0>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19>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6. 24>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4>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7>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1. 30>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18>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3>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6조(연구등록) 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단, 제3항의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논문심사비 납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적용시기는 관련 법률 개정일 기준 차기학기로 한다.)

(3) (경과조치) 제90조(심사위원 구성)의 변경사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3>

(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석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전공)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번호: 한국외대 200 (석)○○○○

(서식 2)

제200 -00호

교 표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 양성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교육과정: ○○○○ 과정
•교육기간: 200 .○○.○○.~○○.○○.

200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 ○

(서식 3)

교 표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FL Progra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ertificate of KFL

This certifies that

○ ○ ○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certificate course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from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ld from 00. 00. 0000 to 00. 00. 0000

_____

Presiden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70 Imun-dong, Dongdaemun-gu, Seoul, 130-791 South Korea